

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

1. 증여자 인적사항

① 법 인 명		②사업자등록번호	
③대 표 자		④법인등록번호	
⑤사업장소재지	(☎ :)		
⑥업 종		⑦사 업 개 시 일 자	
⑧과세연도	년 월 일	년부터 일까지	

2. 수증법인

⑨ 법 인 명		⑩사업자등록번호	
⑪ 대 표 자		⑫법인등록번호	
⑬사업장소재지	(☎ :)		
⑭ 업 종		⑮ 사 업 개 시 일 자	
⑯과세연도	년 월 일	년부터 일까지	
⑰이월결손금		⑱기타 채무면제 · 자산수증익	

3. 주식등을 증여받아 소각할 내용

⑲수증일	⑳주주등		㉑주식등의 수	㉒주식등의 단위당 장 부가액	㉓주식등의 단위당 가 액	㉔합계
	성명	사업자 (주민)번호				

4. 세액감면신청

㉕익금불산입액		㉖손금산입액	
---------	--	--------	--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(□제42조제5항, □제42조제6항)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(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산명세서 포함)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⑰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2. ⑱기타 채무면제·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.
3. ㉔합계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.
 - －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경우: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(㉑×㉓)
 - －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의 경우: 증여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(㉑×㉒)
4. ㉕익금불산입액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5. ㉖손금산입액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㉔합계란에 적은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